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 III. 참고사항

####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 관련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 IV. 문화환경국 결산

### 1. 문화환경국 결산 총괄

####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2,840,967,000	13,141,586,510	12,626,690,370	96%
문화체육과	5,532,053,000	4,127,649,440	4,110,149,440	99.5%
청소행정과	6,516,820,000	8,006,944,960	7,678,942,030	95.9%
환경과	691,494,000	659,671,430	657,491,430	99.6%
부동산정보과	100,600,000	347,320,680	180,107,470	51.8%

####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59,461,895,530	51,529,443,003	3,812,574,810	3,894,508,091	86.6%
문화체육과	21,131,581,530	16,250,707,213	3,197,876,060	1,570,383,228	76.9%
청소행정과	36,021,673,000	33,207,903,830	614,698,750	2,181,735,580	92.1%
환경과	2,037,505,000	1,821,733,480		120,351,763	89.4%
부동산정보과	271,136,000	249,098,480		22,037,520	91.8%

다. 집행잔액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59,461,895,530	3,894,508,091	95,092,096		99,710,660
			498,435,260	3,201,270,075	
문화체육과	21,131,581,530	1,570,383,228	68,421,193		23,531,660
			73,890,900	1,404,539,475	
청소행정과	36,021,673,000	2,181,735,580	1,011,120		71,710,000
			415,310,000	1,693,704,460	
환경과	2,037,505,000	120,351,763	24,880,573		3,100,000
			9,234,360	83,136,830	
부동산정보과	271,136,000	22,037,520	779,210		1,369,000
				19,889,310	

라.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운영	85,100,000	50,134,400	0	34,965,600	58.91%
	문화산업 관리	9,590,000	1,355,000	0	8,235,000	14.13%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	3,400,000	926,200	0	2,473,800	27.24%
	생활체육교실 운영	70,800,000	32,351,660	0	38,448,340	45.69%
	축구교실 운영	63,600,000	18,834,500	0	44,765,500	29.6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307,700,000	137,507,800	0	170,192,200	44.69%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305,862,000	196,858,610	0	92,443,390	64.36%
금천문화회관 운영	132,409,000	51,978,910	0	80,430,090	39.26%
관광활성화	10,657,000	7,067,610	0	3,589,390	66.3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58,500,000	3,650,000	0	54,850,000	6.24%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65,500,000	15,994,000	0	49,506,000	24.42%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38,100,000	331,789,760	0	206,310,240	61.66%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운영	16,500,000	6,792,980	0	9,707,020	41.17%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50,000,000	1,500,000	0	148,500,000	1.00%
책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487,830,000	225,860,480	0	201,656,850	46.30%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9,440,000	3,395,000	0	6,045,000	35.96%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호암산 제2우물지 및 건물지 발굴조사)	601,200,000	16,400,000	484,200,000	100,600,000	2.73%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7,200,000	6,910,500	0	20,289,500	25.41%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2,199,015,060	683,745,650	0	1,515,269,410	31.09%
서울형 북 스타트 지원사업(성인지)	76,142,000	24,513,000	0	51,629,000	32.19%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8,600,000	25,019,610	0	13,580,390	64.82%
금천문화발전정책 네트워크 운영	9,000,000	1,500,000	0	7,500,000	16.67%
소셜믹스형 예술인주택 운영	2,500,000	375,000	0	2,125,000	15.00%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1,814,974,000	185,933,300	1,571,809,000	57,231,700	10.24%

	금천베이스볼파크 운영	30,540,000	20,940,000	0	9,600,000	68.57%
	시흥행궁 전시관 운영	131,566,000	48,038,980	0	83,527,020	36.51%
	금천 대표도서관 건립	50,000,000	0	50,000,000	0	0.00%
	가산도서관 생활 SOC 리모델링 추진	2,100,000,000	13,720,500	2,086,279,500	0	0.65%
	독산 어르신 체육센터 운영	142,752,000	37,916,910	0	104,835,090	26.56%
	학교운동부 체육용품 지원	6,400,000	0	0	6,400,000	0.00%
	금천탁구회관 운영	39,434,000	11,068,300	0	28,365,700	28.07%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626,000,000	21,200,000	420,000,000	184,800,000	3.39%
	박미빛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607,000,000	0	577,630,000	29,370,000	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000,000	1,624,320	0	1,375,680	54.14%
청소행정과	동네방네 쓰레기-Out 아카데미 운영	6,280,000	259,500	0	6,020,500	4.13%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	34,000,000	22,650,800	0	11,349,200	66.6%
	빈용기 신고보상제	300,000	30,000	0	270,000	10%
환경과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7,714,000	3,115,000	0	4,599,000	40.38%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6,000,000	5,987,900	0	10,012,100	37.42%
	지하수 유지관리	24,370,000	15,173,620	0	9,196,380	62.26%
	우리집 마니발전소로 에너지 생산도시 만들기	60,000,000	26,550,000	0	33,450,000	44.25%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	12,000,000	4,260,000	-	7,740,000	3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46,348,000	30,462,440	-	15,885,560	66%
	중개업소 관리	10,270,000	6,067,000	-	4,203,000	59%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3.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구분	부서별	건수	금 액	사유
계		5	37,032	
전용	문화체육과	3	19,300	-참새, 미래향기 작은도서관의 금천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
	청소행정과	2	17,732	-환경미화원(대행업체)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 보조금 매칭사업비 구비분 확보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증가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로 4대 보험료 예산 부족분에 대한 전용

###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2	3,812,574	4	1,275,770	8	2,536,804
문화체육과	8	3,197,876	2	1,205,738	6	1,992,138
청소행정과	4	614,698	2	70,032	2	544,666

#### 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 4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문 화 체 육 과	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시 설 비	2,875,656	2,593,499	325,764	[집행시기 미도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22. 1월중 발주 예정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시 설 비	1,169,974	284,269	879,974	[연도 내 지출 불가] 금빛공원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로 사업 전반의 추진 일정 지연
청 소 행 정 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389,981	261,788	61,232	[연도 내 지출 불가] 공무원 방한복 구매 및 간식비 지원에 대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1. 12. 1 교부되어 연도 내 방한복 구매 계약이 어렵고, 2022년 간식비 선집행 불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행사실비 지 원 금	33,230	14,140	8,800	[연도 내 지출 불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21. 11. 23. 시행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워크숍이 금지되어 2021년 공무원 후생복지 산업 시찰을 불가피하게 미시행(취 소). 2022년도로 연기
--	---------------	---------------	--------	--------	-------	--

## 나.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8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문 화 체 육과	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시 설 비	2,875,656	2,593,499	1,634,800	2021.5월부터 1년간 공사기간
	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감 리 비	35,000	35,000	35,000	2021.5월부터 1년간 공사기간
	금천문화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시설부대비	41,000	10,719	30,280	2021.5월부터 1년간 공사기간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시 설 비	1,169,974	284,269	235,000	2021년 9월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에 따라 사업 변경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	시 설 비	707,500	704,417	15,882	건축공사 공정 중복, 자재 운반통로 미확보로 현장 공사 투입 지연
	금천구민 문화체육 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시 설 비	453,527	399,482	41,175	산업용 보일러제작(특허보유)에 따른 시일소요.
청 소 행정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5,242,895	4,418,838	528,496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소각) 연간단가 계약으로, 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2022. 1월 확정)에 따라 2022년도 계약물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원활한 대응을 위해 2021년도 잔여 계약물량에 대해 2022. 1.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출
	가로환경 유지 관리	연구용역비	20,000	16,170	16,170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 원가계산 용역 예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022년 4월말 준공)



## 5. 기금 결산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777,573,588	31,172,728	56,544,648	54,890,000	779,228,23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504,467,775	△14,759,040	27,429,960	42,189,000	489,708,73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73,105,813	16,413,688	29,114,688	12,701,000	289,519,501

## V. 검토의견

### 1. 세입·세출 결산

- 2021회계년도 문화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126억 2,6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징수율 96%임.
- 세출 결산액은 515억 2,9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1,25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총 38억 9,45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9,509만원, 낙찰차액 4억 9,840만원, 지출잔액 32억 127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971만원임.

### 2.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국의 예산전용은 총 5건 3,7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음.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4건 12억 7,5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8건 25억 3,6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4. 기금 결산

- 문화환경국 소관 운용 기금은 2개이며 결산내역은
  -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7,750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5,480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7,920만원임.

### 5. 검토 의견

-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및 성과 등에 충분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기금 관련 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